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 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제60조제5항 신설)이 공포(6.9.)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(안 제33조의2)

- 1) '25.12.30. 「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」에서 노사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,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(공포일 6.9, 시행일 '27.6.10.)

* 청년·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·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(4시간)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→ (예시)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(예 1/3) 분할 사용 방안 마련

- 2)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,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*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'반일(半日)'과 '연 5일'로 정함

*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6. 7. 13. ~ 8. 24.)

3) 행정규제 :

대통령령 제 호

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연차 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) 법 제60조제5항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”란 반일(半日)과 연 5일을 말
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3조의2(연차 유급휴가의 분할 단위 및 일수) 법 제60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”란 반일(半日)과 연 5일을 말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(구)	
연 락 처	(044) 202 - 7616, 7973